

## 공모요강

# 「한국미술 유통업 국제화-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미술품 유통업 해외 미술시장 진출 판로 촉진을 위해 「한국미술 유통업 국제화 -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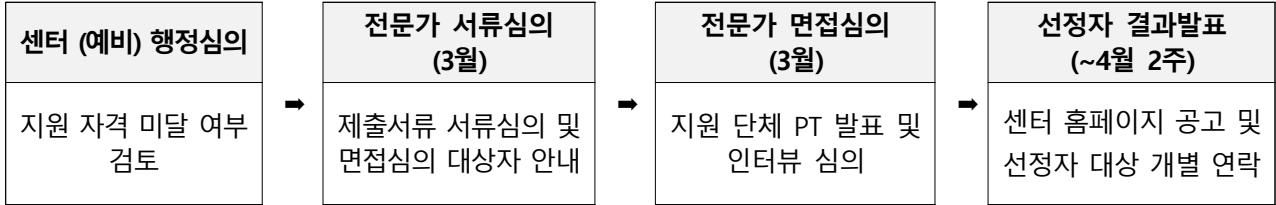
## □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공모명	• 한국미술 유통업 국제화-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
추진목적	• 한국미술 유통 활성화 및 한국 미술 유통업(국내 아트페어 단체) 해외 미술시장 진출 촉진
공모기간	• 2024. 1. 31.(수) ~ 2024. 2. 20.(화) 15:00 까지
지원기간	• 2024. 4. 15. ~ 2024. 12. 10. • 2025. 1. 1. ~ 2025. 12. 10 * 해당 기간 내 개최~종료 완료건에 한 하며, 페어는 설치·철수 제외 주말포함 3일 이상 운영
지원방식	• (24년도 개최/종료 건) - (선정자)교부신청→(센터)보조금 지급 →(선정자)사업추진→(선정자)정산·실적보고→ (센터)정산 검토/승인 • (25년도 개최/종료 건) *분할 교부 (24년도 1차, 25년도 2차), 1차 교부금 임차료 항목에 한 함 - (선정자)24년도 교부신청→ (센터) 1차 보조금 지급 → (선정자)사업추진 → (선정자)1차 보조금에 대한 정산, 1차 실적보고→ (센터)정산 검토/승인 - (선정자)25년도 교부신청→ (센터) 2차 보조금 지급 → (선정자)사업추진 → (선정자)2차 보조금에 대한 정산, 최종실적보고→ (센터)정산 검토/승인
지원규모	• 최대 500백만원
지원내용	• 국내 아트페어 단체가 한국 갤러리로 구성된 아트페어를 해외에서 ① 단독 기획·개최 또는 ② 해외 파트너와 협력 개최하는 아트페어 * 페어 참여 갤러리는 국내에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한국 갤러리로 구성 필수이며, 페어 출품작의 80%이상이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 작가 작품이어야 함 * 미술품이 페어 현장(오프라인)에서 판매 가능하여야 함
지원자격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아트페어 운영 경험을 보유한 국내 아트페어 기획 단체
지원항목	• <b>페어 장소 대관료:</b> 본 페어(전시)를 위한 해외 장소 임차료 • <b>부대행사 장소 대관료:</b> 특별전, 컨퍼런스 등 페어 부대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해외 장소 임차료 • <b>공간 조성 용역비:</b>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설치·철수비 등 • <b>해외 홍보비:</b> 해외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이용비 * 홍보물 (도록, 배너 등) 제작비, 국내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불가

<p><b>지원자격 제외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고 있는 경우</li> <li>•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li> <li>• 온라인 페어만 운영하는 경우 (오프라인 페어 운영 및 현장에서 출품작 판매 가능하여야 함)</li> <li>•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li> <li>•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li> <li>•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li> <li>•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li> <li>•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p><b>선정단체 공통 의무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액의 <b>최소 30% 이상 자기부담금</b> 편성 및 증빙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부담 편성 가능 항목 : 페어 장소 대관료, 부대행사 장소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페어 도록 디자인비, 인쇄비, 현지 홍보물 제작비 등)</li> <li>*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li> </ul> </li> <li>• 출품작의 80%이상인 한국 국적의 한국작가 작품이어야 함</li> <li>• 사업추진 확정 증빙서류(공간 임차 계약서/협약서) 관련, 지원 시 최종 협약서/계약서 문서가 마련되지 않아 산출내역서 등 비확정 서류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 후 30일 이내 개최 전시 기간이 명시된 최종 임차 계약서 또는 협약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li> <li>• 페어 개최 5개월 전까지 최종 계획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지원서 대비 30%이상의 변경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규모 축소, 전액 환수 등 지원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음</li> </ul> </li> <li>• 미술분야표준계약서 사용 필수</li> <li>• 페어 종료 후 20일 이내 정산/실적 보고서(지정서식 준용) 제출 필수이며, <b>12월 개최 아트페어는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실적 보고서 제출 필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 활용하여 회계검사 받은 후 제출</li> </ul> </li> <li>• 선정 후 어떠한 분쟁이나 사유로 사업 미이행 시(페어 무산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차년도 공모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도 개최/종료 건 중 '24년 1차 교부 이후 페어 무산되는 경우 1차 교부금 전액 환수조치</li> </ul> </li> <li>• 사업설명회 및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li> <li>• 홍보/인쇄물 제작 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로고 삽입</li> <li>•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관람객 수 제출 필수 (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될 수 있음)</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수강 및 서약서 서명 필수</li> <li>•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단체는 개최 기간 중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는 부스 제공 및 적극 협조</li> <li>** <b>부스 제공, 참여 갤러리 면담 제외: 선정단체</b> 조사 방법 설계 및 조사원 파견 : 예술경영지원센터</li> </ul> </li> </ul>

## □ 심의 및 결과 발표(안)

- 심의방법 :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 1차 서류심의 →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심의절차



\* 심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 대상 개별 공지
- 심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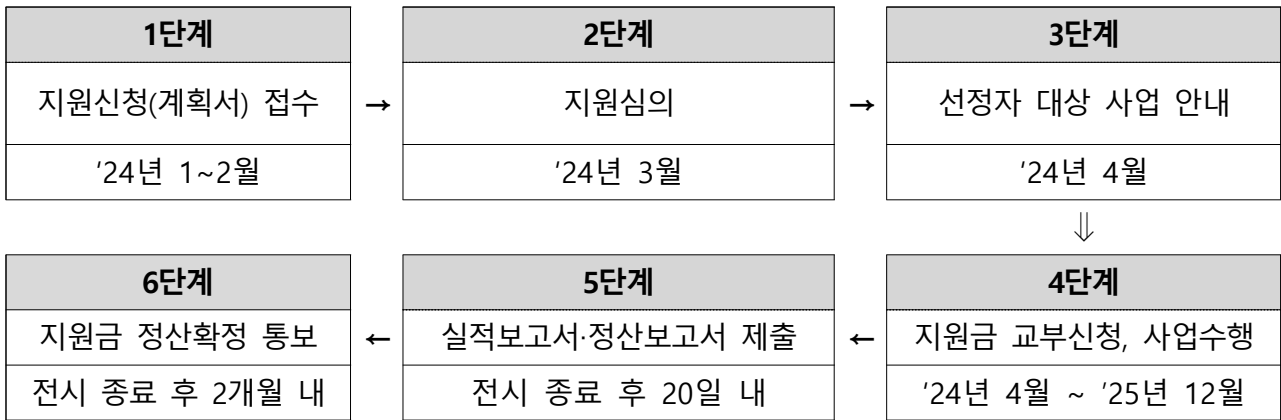
항목		가중치	세부사항
계획	계획의 구체성/ 목적 부합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어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li> <li>○ 참여 한국 작가의 비율은 적절한가</li> <li>○ 참여 화랑 섭외 계획은 어떠한가</li> </ul>
실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활성화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업 경험 정도</li> <li>○ 내·외부 투입 인력/운영구조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li> <li>○ 페어 개최 장소 및 협력기관(해당시)는 적절한가</li> <li>○ 제시된 추진일정과 목표 성과는 적절한가</li> </ul>
성과	성과/ 기대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 목표 성과 (작품 판매액, 관람객 수 등) 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구체적인가</li> <li>○ 페어의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또는 별도 부대행사는 풍부하게 구성되었는가</li> <li>○ 동 사업을 통해 향후 연계 및 후속 성과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li> </ul>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1. 31.(수) 13:00 ~ 2024. 2. 20.(화) 15:00 까지
  - \* 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신청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접수
  - \* 별도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수 불가, 시스템 상 지원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여 마감 당일 이전 제출 권장
  -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시스템 사용, 장애신고)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9595 (e-나라도움 사이트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하여 제출
  - \* 1. 지원신청서의 파일명은 '1.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으로 저장 후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그 외 제출파일은 (2~4번/개별 파일명 하기 참고) ZIP파일로 압축하여 폴더명을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_제출서류'로 저장하여 첨부 제출함
  - \* 필수 제출 자료 미제출, 지정 양식 미준수 시 별도 고지 없이 심사 제외

연번	필수 제출서류	비고	파일명
1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한글)	○ 지정 서식 사용 * 동영상 자료 등 제출 원할 경우, 별도 파일이 아닌 신청서 내 URL 기재	1.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
2	참여 갤러리 및 출품작 정보 (지정서식, 엑셀)	○ 지정서식 사용	2.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_참여 갤러리 및 출품작 정보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_사업자등록증
4	사업 추진 확정 증빙서류	○ 페어 기간, 전시 공간 면적이 명시된 공간 임차 계약서 또는 협약서 * 인보이스로 대체 가능하나 반드시 공식 문서의 형태를 띠 것(상대자 사인/직인 삽입 등). 지원 시 산출내역서/인보이스로 제출되어 선정된 경우, 선정 후 30일 이내 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4.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_추진증빙서류
5	PT 자료 (자유서식 면접대상자에 한함)	○ 면접심의 대상단체에 해당, 사업 세부 추진계획 대한 PT 자료	5. 2024-2025 국내 아트페어 해외 개최 지원_단체명_면접심의

□ **추진절차** \*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지원선정 확정된 사업이라도 아래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지원신청서의 주요 사업내용 및 규모가 센터에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되거나 신청 사업내용의 불이행 시
  - 필수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제출한 증빙자료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성폭력범죄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 참조)
-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4호 참조)

□ **문의**

- (공모내용)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해외진출팀

T. +82-2-2098-2909 / E. artfair.abroad@gokams.or.kr

\* 문의시간: 월~금 10:00-16:00,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e나라도움 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9595